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합53362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주식회사 서릉

4. 정인스틸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5. 25.

판결 선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701,353,364원 및 그 중 446,420,966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53,469,768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각 2017. 6. 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서릉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253,469,768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7. 7.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122,680,82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680,8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서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135,180,82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5,180,8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피고 A이 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주식회사 동부제철(이하 '동부제철'이라고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 보증'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이라고 한다), 피고 A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1	2012. 7. 27.	270,000,000	2012. 7. 27. ~ 2013. 7. 26.(2017. 6. 16.까지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2	2016. 6. 14.	180,000,000	2016. 6. 14. ~ 2017. 6. 13.	중소기업은행

1	2012. 7. 27.	270,000,000	2012. 7. 27. ~ 2013. 7. 26.(2017. 6. 16.까지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3	2016. 6. 14.	260,000,000	2016. 6. 14. ~ 2017. 6. 13.	동부제철

2) 피고 B은 피고 A의 운영자로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그 이행일로부터 연 10%이다.

나. 대출 및 물품공급

1) 피고 A은 제1, 2 보증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2 대출'이라 한다).

1	제1 보증	2012. 7. 30.	300,000,000	2013. 7. 26.(2017. 6. 16.로 변경)	중소기업자금대출
2	제2 보증	2016. 6. 17.	200,000,000	2017. 6. 13.	기업구매자금대출

2) 피고 A은 제3 보증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동부제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2016. 12. 22. 피고 A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6. 12.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51,193,396원(= 제1 대출원리금 271,375,362원 + 제2 대출원리금 179,818,034원)을, 2017. 3. 3. 동부제철에 합계 253,469,768원(외상매출금 223,469,768원 + 부도어음 3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016. 12. 29. 3,266,420원, 2017. 3. 3. 1,506,010원을 각 회수하여

제1, 2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451,193,396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위변제금은 446,420,966원(= 451,193,396원 - 3,266,420원 - 1,506,010원)이 남게 되었고, 위와 같이 회수한 각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2. 29.부터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 합계 27,713원(= 894원(2016. 12. 29.자 회수금 3,266,420원 × 지연손해금 비율 10% × 1/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6,819원(2017. 3. 3.자 회수금 1,506,010원 × 지연손해금 비율 10% × 65/365일))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453,5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피고 A로부터 18,653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1,434,917원(= 1,453,570원 - 18,653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의 어음소지 경위

1) 피고 A은 제3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동부제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서릉(이하 '피고 서릉'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1231597',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2. 27.', 지급기일 '2015. 3. 3.', 지급장소 '농협은행'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동부제철에 배서, 양도하였다.

2) 동부제철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2017. 3. 3. 원고로부터 제3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 받음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마.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6. 11. 29. 피고 정인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인스틸'이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6. 11. 29. 접수 제13096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B, 정인스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서릉: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699,890,734원(= 제1, 2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446,420,966원 + 제3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253,469,768원), 제 1, 2 보증에 따른 확정손해금 27,713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1,434,917원 합계 701,353,364원 및 그 중 제1, 2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446,420,96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12. 29.부터, 제3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253,469,76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3.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7. 6.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릉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배서인인 피고 A과 합동하여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제3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253,469,768원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5.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7. 1.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정인스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6. 11. 29. 무렵 아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연대보증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각 성립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6. 11. 29.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재산상태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처분한 2016. 11. 29.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는 407,5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445,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 B의 2016. 11. 29.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85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2016. 11. 29.에 가까운 2017. 6. 13. 현재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금 699,89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70,490,00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0,000,000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 2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93,75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 B의 2016. 11. 29. 당시 소극재산은 합계 1,114,13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2016. 11. 29.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살피건대, 2016. 11. 29.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인스틸은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 B의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16,000,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32,319,176원, C에 대한 근저당채무 34,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7,680,824원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피고 정인스틸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위 처분행위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6. 12. 22.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위 처분행위에 의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는바, 피고 정인스틸의 악의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정인스틸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였을 뿐, 매수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그런데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 없이 체결된 점, ② 피고 정인스틸은 피고 B 운영의 피고 A에 상당한 기간 동안 철강재를 공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정인스틸은 피고 B으로부터 2016. 3.경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합계가 512,260,614원에 이르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정인스틸은 피고 B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정인스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인스틸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인스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9.자로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후 채권최고액이 2012. 10. 2. 94,800,000원으로, 2014. 11. 24. 42,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2016. 11. 25.자로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2016. 12. 19.,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은 2016. 12. 1.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인스틸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은 위 701,353,364원 및 그 중 446,420,966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6. 2.까지 156일 동안의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079,909원, 2017.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25.까지 357일 동안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5,495,459원,

253,469,768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6. 2.까지 92일 동안의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388,827원, 2017.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25.까지 357일 동안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7,187,139원 합계 829,504,698원이다.

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4.경 현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가 40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위 240,000,000원 중 216,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남아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32,319,176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과 같은 34,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 405,000,000원에서 위 남은 임대차보증금 216,000,000원 및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2,319,176원과 34,000,000원을 공제한 122,680,824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정인스틸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 B이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위 2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인스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인스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 829,504,698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122,680,824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22,680,824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122,680,824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인스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22,680,8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서룡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정인스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구

판사이소민

판사박진욱

별지